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합5561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361,810원 및 그 중 2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5.부터 2021. 7. 4.까지 연 6%, 62,599,100원에 대하여는 2021. 7. 8.부터 2021. 8. 6.까지 연 6%, 108,262,710원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2021. 8. 1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22. 4. 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6. 7. 접수 제1204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481,810원 및 그 중 2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5.부터 2021. 7. 4.까지 연 6%, 62,719,100원에 대하여는 2021. 7. 8.부터 2021. 8. 6.까지 연 6%, 108,262,710원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2021. 8. 1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보험자 화성시에 대한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제1보험	2019. 11. 7.	2019. 11. 17. ~ 2020. 12. 17.	48,400,000
제2보험		2019. 11. 17. ~ 2021. 12. 17.	52,465,600
제3보험		2019. 11. 17. ~ 2022. 12. 17.	51,449,200
제4보험		2019. 11. 17. ~ 2023. 12. 17.	50,432,800
제5보험		2019. 11. 17. ~ 2024. 12. 17.	49,416,400
제6보험	2020. 2. 27.	2020. 3. 5. ~ 2021. 4. 5.	32,188,695
제7보험		2020. 3. 5. ~ 2022. 4. 5.	21,940,160
제8보험		2020. 3. 5. ~ 2023. 4. 5.	21,515,120
제9보험		2020. 3. 5. ~ 2024. 4. 5.	21,090,080
제10보험		2020. 3. 5. ~ 2025. 4. 5.	20,665,040
제11보험	2020. 3. 5.	2020. 3. 5. ~ 2021. 4. 5.	18,029,682
제12보험		2020. 3. 5. ~ 2022. 4. 5.	12,877,920
제13보험		2020. 3. 5. ~ 2023. 4. 5.	12,628,440
제14보험		2020. 3. 5. ~ 2024. 4. 5.	12,378,960
제15보험		2020. 3. 5. ~ 2025. 4. 5.	12,129,480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도록 정하였다(제3조).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3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2018. 7. 1.부터 시행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는 연 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0. 11. 17. 화성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였고, 화성시가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07,361,8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화성시가 청구한 보험금 합계 407,481,81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4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금액 10,800,000원 중 10,6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화성시의 보험금 청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일	청구금액(원)	지급일	지급금액(원)
제1보험	2021. 5. 21.	48,400,000	2021. 6. 4.	48,400,000
제2보험		52,465,600		52,465,600
제3보험		47,634,400		47,634,400
제4보험		44,000,000		44,000,000
제5보험		44,000,000		44,000,000
제6보험	2021. 6. 15.	32,188,695	2021. 7. 13.	32,188,695
제7보험		20,874,015		20,874,015
제8보험		18,400,000		18,400,000
제9보험		18,400,000		18,400,000
제10보험		18,400,000		18,400,000
제11보험		18,029,682	2021. 7. 7.	18,029,682
제12보험		12,289,418		12,289,418
제13보험		10,800,000		10,800,000
제14보험		10,800,000		10,680,000
제15보험		10,800,000		10,800,000
합계	407,481,810원		407,361,810원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화성시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 407,361,81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합계 407,361,81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5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236,500,000원(=

제1보험계약 48,400,000원 + 제2보험계약 52,465,600원 + 제3보험계약 47,634,400원 + 제4보험계약 44,000,000원 + 제5보험계약 44,000,000)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6. 5.부터 30일째인 2021. 7. 4.까지 약정이율인 연 6%, 이 사건 제11 내지 15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62,599,100원(= 제11보험계약 18,029,682원 + 제12보험계약 12,289,418원 + 제13보험계약 10,800,000원 + 제14보험계약 10,680,000원 + 제15보험계약 10,8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7. 8.부터 30일째인 2021. 8. 6.까지 약정이율인 연 6%, 이 사건 제6 내지 10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108,262,710원(= 제6보험계약 32,188,695원 + 제7보험계약 20,874,015원 + 제8보험계약 18,400,000원 + 제9보험계약 18,400,000원 + 제10보험계약 18,400,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7. 14.부터 30일째인 2021. 8.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성관, 판사 김용석, 판사 정의진

별지1

1. 화성시 E 대 388m^2

2. 화성시 E

위 지상 목구조 2층 단독주택

1층 54.68m^2

2층 29.94m^2 . 끝.

별지2

1. 이행(지급)보증보험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부탁으로,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개발부담금 분납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각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아 래

구분	보험계약일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1보험	2019. 11. 7.		화성시	48,400,000	2019. 11. 17~2020. 12. 17.
제2보험	#		#	52,665,600	2019. 11. 17~2020. 12. 17.
제3보험	#		#	51,449,200	2019. 11. 17~2022. 12. 17.
제4보험	#		#	50,432,800	2019. 11. 17~2023. 12. 17.
제5보험	#		#	49,416,400	2019. 11. 17~2024. 12. 17.
제6보험	2020. 2. 27.		#	32,188,695	2020. 3. 5~2021. 4. 5.
제7보험	#		#	21,940,160	2020. 3. 5~2022. 4. 5.
제8보험	#		#	21,515,120	2020. 3. 5~2023. 4. 5.
제9보험	#		#	21,090,080	2020. 3. 5~2024. 4. 5.
제10보험	#		#	20,665,040	2020. 3. 5~2025. 4. 5.
제11보험	2020. 3. 5.		#	19,239,682	2020. 3. 5~2021. 4. 5.
제12보험	#		#	12,877,920	2020. 3. 5~2022. 4. 5.
제13보험	#		#	12,628,440	2020. 3. 5~2023. 4. 5.
제14보험	#		#	12,378,960	2020. 3. 5~2024. 4. 5.
제15보험	#		#	12,129,480	2020. 3. 5~2025. 4. 5.

2. 주채무내용

위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화성시는 피고 회사의 ‘화성시 F 일대’에 관하여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그 분납을 허가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보험금

피고 회사는 2020. 11. 17.경 개발부담금 채납으로 인하여 위 각 보험의 보험사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는바,

- (1) 2021. 6. 4.현재 소외 화성시에 대하여 위 제1내지5보험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236,500,000원(제1보험 48,400,000원+제2보험 52,465,600원+제3보험 47,634,400원+제4보험 44,000,000원+제5보험 44,000,000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화성시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 (2) 2021. 7. 7.현재 소외 화성시에 대하여 위 제11내지15보험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62,719,100원(제11보험 18,029,682원+제12보험 12,289,418원+제13보험 10,800,000원+제14보험 10,800,000원+제15보험 10,800,000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화성시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 (3) 2021. 7. 13.현재 소외 화성시에 대하여 위 제6내지10보험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108,262,710원(제6보험 32,188,695원+제7보험 20,874,015원+제8보험 18,400,000원+제9보험 18,400,000원+제10보험 18,400,000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화성시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지연손해금

위 각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위 약정 제3조 제2, 3항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9%입니다.

4.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위 각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 당시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은 원고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나 G 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나催告없이 원고가 부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갑 제1호증의 1 보증보험 약정서 제4조 참조), 피고 회사는 2020. 11. 17.경부터 위 각 보험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채납으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의 화성시에 대하여 부보하고 있는 위 제1항 기재의 보험가입금액을 원고가 소의 화성시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사전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즉,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20. 11. 17.경부터 위 각 보험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체납으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는 결국 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나. 사회행위

- (1)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의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보험사고발생 후에 피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까.
-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고 회사가 영업부

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면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사고발생 후에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 (3) 피고 C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피고 C의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례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사정과 개발부담금 분납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발생으로 곧 도산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아는 입장에 있었던 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 C, 같은 D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 16276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407,481,810원(제1내지5보험 236,500,000원 + 제6내지10보험 108,262,710원 + 제11내지15보험 62,719,100원) 및 위 돈 중 위 제1내지5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236,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6. 5.부터 2021. 7. 4.까지는 연 6%의, 위 제11내지15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62,719,1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7. 8.부터 2021. 8. 6.까지는 연 6%의, 위 제6내지10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108,262,71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7. 14.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나. 피고 C 의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6. 관할합의 : 원고와 피고 (1),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끝.

